제2023-1회

전체학생대표자회의

2023. 2. 21.



심 의 안 건

심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

발	의 연 월 일 2023. 2. 12.
안	건 발 의 자 중앙운영위원회
안긴	건 상정 근거 「학생회칙」제39조제1호
	제안이유
	○ 「학생회칙」제187조제1항에 따라 일부개정회칙안이 발의되었을 때에
	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부개정회칙안을 심의하기 위함.
	주요내용
	○ 개정취지
	- 심의 원칙과 회계 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, 복잡하고 경직된 예산안
	심의를 효율적이고 유연한 예산안 심의로 바꾸기 위함.
	-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,
	의결기구 및 재정 등 총학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
	위함.
	○ 주요골자
	- 제59조의2를 신설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함.
	- 제165조를 개정하여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을 가을학기 종강일로 변경함.
	- 제167조를 개정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함께 심의하여야 하는 원칙을 예산안 및
	결산을 각각 심의하는 원칙으로, 심의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2회로, 심의 주기를
	상반기, 4분기, 1분기에서 상반기, 하반기로 변경함.
	- 제168조를 개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층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할 수
	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.
	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: 붙임
	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: 별첨1
	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2
	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: 별첨3
	참고사항
	○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: 2023. 2. 12.
	○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공고: 2023. 2. 16.
	의결문안
	○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한다.

붙임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

안건 발의를 의결한 회의체 명칭	중앙운영위원회
해당 회기의 명칭	제2023-4회 중앙운영위원회(2월, 임시회)
해당 회기의 일시	2023. 2. 12.
안건제목	심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
표결결과	총원: 21명/재적: 21명 재석: 19명/찬성: 18명/반대: 0명/기권: 1명
해당 의결사항의 의사	-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 별첨2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 중 제59조의2에 관하여 제3항이 추가된 오기재를 정정함.

심의안건 제2호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

발 의 연	년 월 일 2023. 2. 12.
안 건 빌	· 의 자 중앙운영위원회
안건 상점	정 근거 「학생회칙」제39조제1호
□ 제인	인유
0	「학생회칙」제14조,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부개정세칙안·일부개정규칙안이
	발의되었을 때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부개정세칙안·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기
	위함.
□ 주요	··· 2내용
	개정취지
O	- 예산안 비율을 결정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, 경직된 예산안 심의 방식을
	유연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함.
0	주요골자
	-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예산안 비율을 매 반기 초에만 결정할 수 있는
	시기적 제약을 해소함.
	-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
	또는 기층기구의 예산안 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.
□ 재정	d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: 붙임
□ 재정	d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: 별첨1
□ 재정	!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2
□ 재정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□ 참고	L사항
\circ	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: 2023. 2. 12.
0	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공고: 2023. 2. 16.
□ 의결	년문안
	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한다.

붙임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

안건 발의를 의결한 회의체 명칭	중앙운영위원회
해당 회기의 명칭	제2023-4회 중앙운영위원회(2월, 임시회)
해당 회기의 일시	2023. 2. 12.
안건제목	심의안건 제3호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
표결결과	총원: 21명/재적: 21명 재석: 17명/찬성: 17명/반대: 0명/기권: 0명
해당 의결사항의 의사	-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.